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7. .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6월 8일, 김은혜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6년 7월 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2026.7.2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 소위원회부

제8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7.27.) 상정, 축조심사

제9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7.28.) 상정, 축조심사

제10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7.3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폐기)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2026.7.30.)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은혜의원)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가 진행되던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를 비롯한 강남구, 광진구, 동작구, 서초구, 인천 연수구, 부산 중구, 대구 남구, 울산 남구 등 전국 각지의 투표소 50여곳에서 유권자들의 투표 용지가 누락되어 참정권이 정면으로 훼손된 사태가 발생하였음.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해야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 본령인 선거에 있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필수적인 투표 용지를 의도적으로 유권자의 수보다 현저히 적게 준비하였고, 이로 인해 실제 유권자들의 투표권리 행사에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손해를 야기시켰음.

공직선거법 제196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선거를 연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위반하고 투표와 개표를 강행하였음.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이후 투표 및 개표를 연기하지 않고 강행할 경우, 유권자들이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개표방송을 통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할 수 있는 상

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잡지 않음으로서 공직선거법의 근본 정신을 심대하게 훼손하였음.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의 개표함을 반출하기 이전에 투표 농단 사태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회와 국민의 분명한 요구가 있었고, 이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함 이송을 강행하지 않을 것을 선언했으나 이후 이를 배반하고 경찰 등 국가의 물리력을 동원해 투표소 인근의 시민들을 강제로 제압했고 이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상해를 입는 국가폭력 사태를 유발하였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 친인척 채용 특혜 논란, 위법 투표 관리 논란 등 수차례의 부정, 부패, 무능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반복적으로 실추시켰고 민주주의 국가의 뿌리와 같은 선거제도의 신뢰를 오염시켜온 바 작금의 선거 농단 사태를 통해 더 이상 자정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조직임이 확인되었음.

이에 독립적 지위와 수사 역량을 갖춘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농단 사건에 대하여 그 원인과 과정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이후 다시는 우리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이 위협당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자 함.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기도)

- 수사대상으로 공통적으로 2026년 6월 3일 시행된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및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고,

상기한 공통 사항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김은혜의원안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청와대 및 정부 기관의 관리 소홀, 책임 회피 문제 및 시민 집회에 대한 국가폭력 사태와 관련된 범죄 의혹 일체 등을, 백혜련의원안은 본투표용 투표용지의 인쇄 물량 산정 및 그 기준의 개정·시행 등 투표의 준비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위법행위를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 등을, 유상범의원안은 중대한 선거 부정 의혹이 발생하였음에도 개표를 강행하였다는 의혹 사건, 투표함이 불법 반출·이송되었다는 의혹 사건 및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투표용지가 보관·전달·이송되거나 타지역 투표지가 발견되는 의혹사건 등을, 한병도 의원안은 전북교육감 선거 등 전국에서 발생한 선거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로 인한 유권자 투표 누락 사태, 선관위 고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자녀 승진 특혜 및 채용비리 등 기관 운영 전반의 방만 운영과 비리 사건 등을 규정함.

- 특별검사의 임명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김은혜의원안 및 유상범의원안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대통령에게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백혜련의원안은 교섭단체 및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가 각 1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병도의원안은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및 대한변호사협회가 대통령에게 각 1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함.

○ 조직 규모와 관련하여서는,

김은혜의원안 및 백혜련의원안은 각각 특별검사보 4인, 파견검사 20인, 특별수사관 40인, 파견공무원 40인인데 반해, 유상범의원안은 특별검사보 5인, 파견검사 15인, 특별수사관 100인, 파견공무원 130인으로, 한병도의원안은 특별검사보 5인, 파견검사 30인, 특별수사관 50인, 파견공무원 70인으로 규정함.

○ 수사기간과 관련하여서는,

백혜련의원안은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60일, 연장 60일로 최대 총 140일인 반면, 김은혜의원안, 유상범의원안 및 한병도의원안은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90일, 연장 30일, 재연장 30일로 최대 총

170일임.

- 마지막으로 김은혜의원안은 특별검사가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한 데 반해, 백혜련의원안과 한병도의의원안은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유상범의원안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국수본부장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함.

####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김승원)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